

RESEARCH ARTICLE

Key Issues in the WIPO IGC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Young Mo Kim^{1,2}

¹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Republic of Korea

²Ph.D. in Industrial Security

Corresponding Author: Young Mo Kim (ymkim524@gmail.com)

ABSTRACT

Traditional knowledge (TK) refers to knowledge created, preserved, and transmitted within the cultural identity and lived experience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 TK cannot be fully protected by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alone. Whil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dopted the 2024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K protection itself remains unresolved. In particular, provider and user countries continue to disagree on the form of protection and the criteria for protected subject matter.

This study examines the key issues in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 discussions on protecting TK. It reveals that the IGC's main concern is the protection of IPLC's TK, reviews the general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K, and compares the rights and measures-based approaches. It also analyzes the differing positions under Article 3 of the draft instrument: Provider countries favor broader protection aligned with the general concept of TK, whereas user countries support narrower, more specific eligibility requirements. As a user country, Korea requires a balanced negotiation strategy that supports innovation while meeting international protection obligations.

KEYWORDS

traditional knowledge, WIPO, IGC,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rights-based approach, measures-based approach

Open Access

Received: March 27, 2026

Revised: April 06, 2026

Accepted: September 04, 2026

Published: September 30, 2026

Funding: The author received manuscript fees for this article from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2026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원저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WIPO IGC 논의의 핵심 쟁점 및 대응 방안*

김영모^{1,2}

¹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²보안경영박사

교신저자: 김영모 (ymkim524@gmail.com)

차례

1. 서론
2. WIPO IGC 논의의 전통지식
 - 2.1. 개요
 - 2.2.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
 - 2.3. 전통지식의 특징과 구분
3.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핵심 쟁점
 - 3.1. 보호 방식에 관한 쟁점: 권리 기반 접근법과 조치 기반 접근법
 - 3.2. 보호대상에 관한 쟁점: 일반적 적격 기준과 구체적 적격 기준
 - 3.3. 핵심 쟁점에 관한 대응 방안
4. 결론

국문초록

전통지식은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IPLC)의 문화적 정체성, 생활양식, 경험 속에서 형성·유지·전승되는 지식체계이다. WIPO 정부간위원회(IGC)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에 관한 WIPO 조약을 채택하였다. 반면, 전통지식 보호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며, 특히 보호 방식과 보호대상 적격 기준에 대해 제공국과 이용국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본 연구는 전통지식 보호와 관련한 IGC 논의의 구조와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 우선, IGC가 보호하고자 하는 전통지식의 기본 전제가 'IPLC의 전통지식'임을 밝히고, 전통지식의 특징과 일반적 정의를 정리한다. 이어 권리 기반 접근법과 조치 기반 접근법의 개념과 실질적 함의를 검토하고, 조약문(안) 제3조의 보호 적격 기준에 관한 제공국과 이용국의 입장 차이를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공국은 일반적 전통지식과 보호대상 전통지식의 범위를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반면, 이용국은 구체적·제한적 적격 기준을 통해 보호범위를 축소하려 한다.

전통지식 보호를 둘러싼 IGC 논의는 단순한 개념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IPLC의 권리보장, 기술혁신, 국제적 의무의 수준을 둘러싼 규범적 조정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지식 논의에서 이용국의 위치에 있으므로,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산업·기술 발전과 국제적 보호의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주제어

전통지식,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위원회,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권리 기반 접근법, 조치 기반 접근법

1. 서론

과거,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은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¹⁾ 이러한 인식 아래 이루어진 선진국 기업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불공정·불평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²⁾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나 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하거나, 이러한 이용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는 더 이상 개별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제적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그 결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과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이 탄생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과 함께,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는 유전자원,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전통문화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과 관련하여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공정한 이익공유와 실질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이하 “IGC”)’를 출범하였다.³⁾ IGC의 실질적인 논의 주제는 (i) 유전자원, (ii)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하 “관련 전통지식”), (iii) 전통지식, (iv) 전통문화표현물이다. 2001년 제1차 IGC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5월 24일 “WIPO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이하, “WIPO 조약”)’이 채택되었다. 동 조약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⁴⁾

‘유전자원’과 ‘출처공개’는 익숙한 개념이자 용어이며,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IGC에서 논의 중인 ‘전통지식’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통지식’은 새로운 것도 부수적인 것도 아니다. 전통지식 역시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경제적·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⁵⁾ 유전자원과 함께 보호와 이익공유의 대상이다. 특히, 최근 바이오산업이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완료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⁶⁾ 이런 전통지식에 관하여 생물다

* 본 원고는 2026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처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2026년 지식재산 글로벌 아젠다 대응사업”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1) Krystyna Swiderska,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A framework based on Customary Laws and Bio-Cultural Heritage”, Paper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dogenous Development and Bio-Cultural Diversity, IIED, 2006, pp. 4-5.
- 2) 김영모·강경남, “유전자원 출처공개 국제 논의 현황과 국내 산업영향 분석”, IP Focus, 제2024-0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4면.
- 3) 김영모·강경남, 위의 글, 7면.
- 4) 그러나, 출처공개가 특허 출원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IP5의 조약 가입 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 조약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김영모, “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에 관한 검토: WIPO 조약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집 제3호(2024), 238-239면).
- 5) WIPO,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O/GA/26/6)”, WIPO, 2000, p. 1.
- 6) N. S. Gopalakrishnan,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he Need for a Sui Generis Law in India”, *The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Vol.5 No.5(2002), pp. 725-742; 배대현, “특허실체법조약(안)의 특허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산업재산권」, 제13호(2003), 14-16면; 김병일, “전통지식

양성협약⁷⁾과 나고야의정서⁸⁾에서 뿐만 아니라 「WIPO 조약」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지식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⁹⁾ 유전자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IGC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삼면이 바다이고 국토의 약 63%¹⁰⁾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기에 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제공국 지위일 수 있다. 그러나 IGC 논의의 전통지식인 경우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이용국 지위만 가능하다. 국제규범을 통한 전통지식 보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의무자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관련 IGC 논의에 있어 수동적 대응이 아닌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그러나 IGC가 논의하고 있는 전통지식 보호체계의 기본 개념과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한 국내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관련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2026년 3월에 실시되었던 제52차 IGC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WIPO IGC 논의의 전통지식

2.1. 개요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과 관련하여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의 공정한 이익공유와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WIPO IGC가 출범하였다. 전통지식은 새롭게 등장한 쟁점이 아니라, IGC 설립 목적의 핵심 의제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WIPO 조약」 채택을 통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를 일단락하였으며,¹¹⁾ 현재는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처가 전통지식 논의에 대한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으며,¹²⁾ ‘한국전통지식포털’¹³⁾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처 소관인 전통지식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전통문화표현물’은 별론으로 한다.

현재 IGC는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문을 만드는 작업 중에 있다.¹⁴⁾ 특히, 전통지식을 어떠한 방식과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전통지식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집중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제공국과 이용국으로 나뉘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다행히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다. 바로 “전

의 독자적(sui generis)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WIPO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ISSUE PAPER, 제2017-8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2면.

7) 전문 13번 단락은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구성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기술혁신 및 관행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라 하고 있다.

8) 전문 23번 단락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간 상호연관성, 토착지역공동체에 있어 ... 이들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전통지식의 중요성에 주목하고”라 하고 있다.

9) 김병일, “전통지식의 특별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WIPO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 「정법법학」, 제16권 제1호(2012), 95면.

10) 산림청, “산림임업통계플랫폼: FoSS 산림통계시스템”, 산림청, <<https://kfss.forest.go.kr/stat/>>, 검색일: 2026. 3. 18.

11) IGC는 2001년 4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의 이익공유와 보호에 관하여 지식재산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7월 개최된 WIPO 총회에서 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 관련 조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 내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김영모,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과 해외 입법례”, IP Focus, 제2023-26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6면). 그리고 2024년 5월 24일 동 조약이 채택되었다.

12) 전통문화표현물 논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다.

13) 지식재산처, “한국전통지식포털”, 지식재산처, <<https://koreantk.com/>>, 검색일: 2026. 3. 18.

14) 최근에 진행된 IGC 논의는 제49차, 제50차, 제51차, 제52차다. 제49차와 제50차의 경우 논의를 통해 수정안이 도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폐기되었다. 제51차 IGC를 통해 수정안이 도출되었으나, 수정의 내용은 매우 미미하여 발전적인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 2026년 3월 실시된 제52차의 경우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통지식의 권리자는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이하 “IPLC”)”라는 것이다.¹⁵⁾ 즉, IGC가 조약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전통지식의 기본 전제는 “IPLC의 전통지식”이다.

2.2.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

2.2.1.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원주민은 특정 지역에 원래부터 거주해 온 사람들을 의미하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정의는 없다. 생물다양성협약도 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¹⁶⁾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지역과 국가마다 역사, 문화, 사회, 환경 등이 서로 다르기에 모든 원주민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¹⁷⁾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엔(UN)은 원주민을 특정하기 위한 일반적 요소로서¹⁸⁾ (i) 개인 차원에서 스스로를 원주민으로 자가 식별하며, 해당 공동체로부터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것, (ii) 식민지화 이전 및(또는) 이주 정착 이전 사회와의 역사적 연속성, (iii) 영토 및 주변 자연 자원과의 강한 연계성, (iv) 고유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체계, (v) 독자적 언어, 문화, 신념 체계, (vi) 사회 내에서 비지배적 집단을 형성, (vii) 고유한 민족과 공동체로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환경과 제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려는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주류사회 또는 지배적 문화 그리고 사회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원주민이며, 이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지역공동체로, 이들을 총칭하는 용어가 IPLC이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7,660만 명의 원주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¹⁹⁾

세계 여러 지역의 IPLC는 소득, 고용, 교육 및 건강 수준 등에서 주류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취약성 속에서 IPLC는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 온 지식과 문화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생존과 정체성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IPLC가 주장하는 보호대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생물자원의 활용, 의약, 농업, 생태, 생활 기술 등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장기간 축적해 온 기술과 이해로서의 ‘전통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의례, 이야기, 시, 이미지, 디자인, 의복, 직물, 음악, 춤과 같은 문화적 관행에 관한 기술과 이해로서의 ‘전통문화표현물’이다.

IGC는 유전자원과 함께 이 두 가지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IPLC는 전통지식의 실질적 보호가 현행 지식재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단적·세대간·관습법적 성격을 지닌 전통지식을 개인적 성격과 일정한 보호기간을 전제로 하는 지식재산을 통해 보호

15)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IPLC가 없다(손승우·이정훈, “최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재산권」, 제61호(2019), 304면). 그러므로 WIPO IGC 논의를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바라보아선 안 된다.

16) 유엔의 원주민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DRIPs)에서도 원주민(Indigenous Peoples)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용어 정의에 대해서도 권고하지 않기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 용어집(CBD, “Glossary of relevant key terms and concepts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8(j) and related provisions (CBD/COP/DEC/14/13)”, CBD, 2018, pp. 1-7)에도 IPLC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는 이유를 담고 있다(이민우 외 2인,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비교 연구 -WG8와 WIP O/IGC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1호(2020), 168-169면).

17) WHO,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the health and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WHO, <<https://www.who.int/initiatives/global-plan-of-action-for-health-of-indigenous-peoples/frequently-asked-questions-on-the-health-and-rights-of-indigenous-peoples>>, 검색일: 2026. 1. 1.

18) United Nations, “Indigenous Peoples, Indigenous Voices”, United Nations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https://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5session_factsheet1.pdf>, 검색일: 2026. 1. 2.

19) WHO, supra note 17.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전통지식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전통지식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한 독자적인 보호체계, 즉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로의 인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 IGC 논의에서도 전통지식에 대한 ‘독자적 권리’ 부여 쟁점이 가시화되었다. 제공국은 이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반면, 이용국은 전통지식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는 가능한 현행 지식재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²⁰⁾

2.2.2. 지식재산을 통한 전통지식 탈취사례

제공국과 IPLC는 현행 지식재산이 전통지식의 실질적 보호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통지식의 남용·악용·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Quassia amara²¹⁾ 사건이 있다. 본 사건은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이 특허제도를 통하여 제3자에 의해 독점되고, 정작 해당 전통지식을 원래부터 보유하고 전승해 온 당사자는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전형적인 ‘전통지식 약탈(piracy)’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연구기관인 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 (이하 “IRD”)는 Quassia amara로부터 말라리아 치료 효과가 있는 활성성분인 Simalikalactone E (이하 “SkE”)를 분리하였다. 해당 지식의 출처는 프랑스령 기아나 지역 IPLC의 전통 의약 지식이었다. 2015년 3월, IRD는 해당 활성성분에 대해 유럽특허청(EPO)로부터 특허를 취득했고, 이 특허로 인해 IRD는 해당 화합물과 이를 이용한 치료법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령 기아나 지역 IPLC의 전통 의약 지식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²²⁾ 기아나 지역 IPLC는 신약 개발의 출발점이 된 전통 의약 지식을 제공한 ‘공헌자(contributor)’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그 지식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 바로 ‘전통지식의 약탈’이라는 것이다.²³⁾ 프랑스 NGO인 France Libertés-Danielle Mitterrand Foundation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 했지만, 2018년 EPO는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²⁴⁾

본 사건은 IPLC의 사전 동의 없이 그들의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의약품이 개발되고 특허등록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졌고, 제공국과 IPLC가 지식재산을 전통지식 보호 수단으로서 인정하지 않게 된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²⁵⁾ 그러므로 제공국과 IPLC는 전통지식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지식재산의 활용 또는 확대가 아닌, 전통지식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권리’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 김혜선, “지식재산권법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8집 제3호(2014), 176면.

21) 쓴나무, 영어로는 bitter wood로 살충제, 전통의학 및 식품 산업의 첨가제로 사용된다.

22) Ugonma Nwankwo & Charles Kenny, “Their Knowledge, Their Rights: Us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ellectual Property to Protect Communities”,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https://www.cgdev.org/blog/their-knowledge-their-rights-using-traditional-knowledge-and-intellectual-property>>, 검색일: 2026. 1. 2.

23) France Libertés-Fondation Danielle Mitterrand, “The Couachi Plant: A Case History of Biopiracy”, France Libertés, 2022, pp. 1-8.

24) Cleo-Symone Scott, “Biopiracy: Using New Laws and Databases to Protect Indigenous Communities”, *Richmon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30 No.2(2024), p. 451.

25) 이러한 전통지식 약탈로 비판받는 미국의 특허등록 사례로는 Neem (*Azadirachta indica*: U.S. Patent No. 4,946,681 (issued Aug. 7, 1990); U.S. Patent No. 5,124,349 (issued Jun. 23, 1992).), Turmeric (*Banisteriopsis longa*: U.S. Patent No. 5,401,504 (issued Mar. 28, 1995).), Quinoa (*Chenopodium quinoa*: U.S. Patent No. 5,304,718 (issued Apr. 19, 1994).), Ayahuasca (*Banisteriopsis caapi*: U.S. Plant Patent No. 5,751 (issued Jun. 17, 1986).) 등이 있다(김병일, 앞의 글(주 6), 2면).

2.2.3.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

IGC가 보호하고자 하는 전통지식은 ‘IPLC의 전통지식’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우선 「WIPO 조약」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동 조약 제3.2조에 따르면,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계약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해당 전통지식을 제공한 IPLC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제공의무를 넘어서는 것으로, 관련 전통지식이 특정 IPLC와 결부되어 있음을 특허제도를 통해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본 조약은 관련 전통지식이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지식이 아니라 IPLC와 연결된 지식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IGC 논의 역시 같은 전제에서 전개되고 있다. 논의의 기본이 되는 문안의 서문을 살펴보면, “IPLC가 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재산, 특히 전통지식에 대해 이를 유지·통제·보호·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²⁶⁾ IPLC의 전통지식이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과학적, 지적, 상업적 및 교육적 가치를 포함하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²⁷⁾ 전통지식 체계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이러한 체계를 보존·유지해 온 전통지식 보유자들의 존엄성, 문화적 온전성 및 정신적 가치를 존중함을 촉진한다.²⁸⁾”는 것을 조약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문 내용은 IGC가 논의하는 전통지식 보호체계의 중심에 IPLC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 문안 제2조(목적)의 Original Facilitators’ Alternative와 Alternative X도 본 조약의 목적이 “IPLC를 전통지식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⁹⁾ 이는 전통지식의 보호 논의가 단순히 지식 그 자체의 이용에 있어 공정한 질서를 정하고 보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식이 실질적·역사적·문화적으로 누구와 결부되어 있는지를 국제규범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IGC가 논의하는 전통지식은 IPLC와 결부되어 있고, IPLC에 의해 형성·유지·전승되어 온 전통지식이다.

다만, 바로 이 부분에서 제공국과 이용국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공국과 IPLC는 자신들의 전통지식 전부가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전통지식이 IPLC의 문화적·사회적·역사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IPLC의 전통지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의 이용국은 모든 IPLC의 전통지식을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 기술혁신, 지식의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이용국은 일반적 전통지식과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을 구분하고,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적격 기준을 설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호대상에 대한 제공국과 이용국의 의견 대립은 제3조(보호의 적격 기준)에 관한 논의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3. 전통지식의 특징과 구분

2.3.1. 전통지식의 특징

전통지식의 정의와 관련하여 IGC는 “단일하고 배타적인 정의를 확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의가 적합하다”고 하였다.³⁰⁾ 전통지

26) WIPO,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Draft Articles (WIPO/GRTKF/IC/52/4)”, WIPO, 2025, Preamble/Introduction para. 2.

27) Ibid., para. 4.

28) Ibid., para. 2.

29) Ibid., Article 2 Objectives.

30) WIPO,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식체계, 관습, 관행, 기술·노하우, 전통적 삶의 방식 등 문화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있고 변화하며 전승되는 것³¹⁾이므로 모든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통지식 정의를 정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아직 단일한 정의는 없으나, 전통지식 관련 WIPO 설명과 기타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통지식은 다음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세대 간 또는 세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는 지식이다.³²⁾ 이는 세대 내 또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식, 기술, 관습 등을 포함한다. 둘째, 집단적·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³³⁾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의 독점적 창작물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문화적·사회적 배경, 경험, 관습 속에서 형성되고 전승되는 것이다. 셋째, 해당 공동체의 문화적·정신적 정체성과 연관된 것이다.³⁴⁾ 따라서 전통지식이란 단순한 기술 정보가 아니라, 해당 공동체의 가치, 문화, 전통, 생활양식, 정신적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전통지식은 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는 지식 체계이다.³⁵⁾ 전통지식은 고정된 과거의 유물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지식이다. 다섯째, 전통지식은 전통적 맥락 속에서 형성·유지·전승되는 것이다.³⁶⁾ 전통지식이 생성되고 유지되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활 방식, 관습,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성 및 유지되는 것이다. 여섯째, 지식의 기원이 특정한 사람들, 집단 또는 공동체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들은 보통 ‘원주민(indigenous people)’, 또는 ‘traditional people’이라 불리며 최근에 ‘cultural peopl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³⁷⁾

전통지식 보호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전통지식의 정의를 규범적·통일적으로 정립한 국제규범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³⁸⁾ 예를 들어, CBD는 제2조를 통해 “유전 자원이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³⁹⁾ 결국 관련 국제조약들은 전통지식에 대하여 확실적인 정의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보호대상과 적격 기준을 IGC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and Folklore - An Overview (WIPO/GRTKF/IC/1/3)”, WIPO, 2001, para. 65.

31) WIPO Traditional Knowledge Division,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ellectual Property, Background Brief No.1”, WIPO,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tk/en/docs/background_brief_on_tk.pdf>, 검색일: 2026. 1. 2.

32) WIPO, “Traditional Knowledge”, WIPO, <<https://www.wipo.int/en/web/traditional-knowledge/tk/index>>, 검색일: 2026. 1. 3.

33)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 Introduction to Core Concepts and Objectives: What are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Why Should They Receive Legal Protection?”, Regional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2009, p. 3.

34) WIPO Traditional Knowledge Division, *supra* note 31, p. 1.

35) IWGIA,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WGIA, <<https://iwgia.org/en/world-in-intellectual-property-organization-wipo.html>>, 검색일: 2026. 3. 1.

36) WIPO Traditional Knowledge Division, *supra* note 31, p. 1.

37) Ibid.

38) 2024년 5월 채택된 WIPO 조약도 전통지식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이는 CBD와 나고야의정서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IGC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김영모,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에 관한 협상쟁점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 19권 제2호(2024), 83면).

39) 생물다양성협약의 경우 협약문에는 전통지식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용어집을 통해 전통지식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CBD, 앞의 글(주 16), p. 2: Traditional knowledge: The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releva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2.3.2. 일반적 전통지식과 보호대상인 전통지식

IGC는 전통지식에 관하여 하나의 획일적인 보호체계를 구성하기보다는, 우선 ‘일반적 정의’를 설정하고, 별도로 ‘실질적인 보호대상으로서의 전통지식’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전통지식의 일반적 정의와 법적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의 범위를 구분 지어 규율하려는 것으로, 이는 전통지식의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는 점과 모든 전통지식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경우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IGC는 제1조를 통하여 일반적 전통지식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조약문이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되지 않아 확정된 정의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보면, “전통지식이란 원주민, 지역공동체 또는 기타 수혜자⁴⁰⁾로부터 유래한 지식을 의미하며, 이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성격을 지닌다. 또한 전통적 맥락 안에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한 지적 활동, 경험, 영적 수단, 통찰의 결과로서 토지 및 환경과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노하우, 기술, 혁신, 관행, 가르침, 학습 등을 포함한다.”⁴¹⁾

그러나 문제는 일반적 전통지식과 조약상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 또는 구분하여 판단할 것인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공국과 IPLC는 가능한 최대 범위의 전통지식을 보호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거로는 전통지식이 공동체의 문화적·역사적·사회적 정체성, 생활양식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보호대상과 관련한 적격 기준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설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전통지식이 보호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선진국이자 주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이용국의 견해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일반적 전통지식의 정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과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게 설정되는 경우, 연구개발, 기술혁신, 산업적 활용 및 퍼블릭 도메인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IGC 논의의 핵심은 일반적 정의(제1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에 대한 적격 기준(제3조)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있다. 제공국은 이 둘을 일치시키려는 반면 이용국은 명확히 구분하여 달리 판단하고자 한다. 이렇듯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IGC 논의는 단순한 정의 정립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범위 설정과 보호 의무의 정도에 관한 이해대립의 장이다.

3.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핵심 쟁점

3.1. 보호 방식에 관한 쟁점: 권리 기반 접근법과 조치 기반 접근법

3.1.1. 의의와 개념

전통지식 보호 방식에 있어 IGC 논의의 근본적인 대립축은 ‘권리 기반 접근법(rights-based approach)’과 ‘조치 기반 접근법(measures-based approach)’이다. 전자는 제공국과 IPLC가 지지하고 있으며, 후자는 이용국이 지지하고 있다. WIPO 사무국은 2023년 문서에서 두 접근법을 국제규범 설계의 핵심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⁴²⁾

40) 전통지식의 권리자는 아니지만 전통지식을 통해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수 있는 수혜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박물관, 전통지식 협회 등이 있다.

41) Traditional Knowledge refers to knowledge originating from Indigenous [Peoples], local communities and/or [other beneficiaries] that is dynamic and evolving and is the result of intellectual activity, experiences, spiritual means, or insights in or from a traditional context, which may be connected to land and environment, including know-how, skills, innovations, practices, teaching, or learning (WIPO, supra note 26, Article 1).

42) WIPO, “Legal Principles Related to an International Instrument (WIPO/GRTKF/IC/46/10)”, WIPO,

권리 기반 접근법은 전통지식 보호의 출발점을 ‘IPLC의 법적 권리(right entitlements) 인정’에 둔다.⁴³⁾ 이에 따르면 전통지식은 정책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객체가 아니라, IPLC에 귀속되는 법적 권리 및 이익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IPLC 또는 수혜자는 자신의 전통지식에 관한 접근, 이용, 상업화, 라이선스 부여, 이익공유, 출처표시 요구, 왜곡 및 변형에 대한 반대·제지 등의 일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제3자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⁴⁴⁾⁴⁵⁾ 권리 기반 접근법에 따르면, 국가가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조치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 누가 전통지식의 권리자인가가 중심 문제가 된다.

조치 기반 접근법(measures-based approach)에 따르면, IPLC에게 “새로운 고유한 권리”를 부여하기보다는, 국가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⁴⁶⁾ 이는 전통지식 보호의 핵심이 권리의 창설이 아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설계·운영에 있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의무제도,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을 기반으로 체결된 이익공유(benefit-sharing) 계약,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제도 등이 있다.

조치 기반 접근법에 따르면, 조약은 전통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창설보다는, 전통지식의 남용·악용을 방지하고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수단(정책, 제도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회원국 재량에 위임되고, “연성법(soft law)”이나 “구속력 없는(non-binding)” 성격의 조약이 완성되게 된다. 이는 국가마다 상이한 전통지식 상황과 법제도 환경을 고려하여 전통지식 보호를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권리 기반 접근법은 IPLC를 전통지식의 권리주체로 인정한 후 전통지식 보호 관련 제도들을 모색하는 방법이고, 조치 기반 접근법은 국가를 전통지식의 보호·관리 조치의 책임 주체로 인정한 후 전통지식 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3.1.2. 실질적 함의

물론, 이 두 접근법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두 접근법 모두를 포함하는 국제지식재산규범 사례도 있다.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1996)의 경우 복제권·배포권·공중송신권 등을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로 설정(권리 기반 접근법)하는 동시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또는 이를 우회하기 위한 도구의 배포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할 것을 계약국에게 요구(조치 기반 접근법)하고 있다.⁴⁷⁾ 이는 권리 부여와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IGC 논의에 있어 어느 접근법을 기본 구조로 삼느냐는 조약의 방향성 설정과 밀접하기에, 이에 관한 제공국과 이용국의 대립은 상당하다.

권리 기반 접근법이 채택되는 경우, 조약은 IPLC를 전통지식의 실질적인 권리자로 인정하고 전통지식에 대한 통제권, 이용허락권, 이익공유청구권, 인격적 보호 등을 명시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IPLC는 자신들의 전통지식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며 전통지식의 상업화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게 된다. 또한, 자신들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과

2023, paras. 19-22.

43) Ibid., para. 19.

44) Ibid.

45) 권리 기반 접근법에 대한 예로는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이 저작자에게 다양한 배타적 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부여하는 것이 있다.

46) WIPO, supra note 42, para. 20.

47) Ibid., para. 22.

공동체의 존엄을 권리의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다.⁴⁸⁾ 반면, 연구개발·기술혁신 및 산업발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다.

조치 기반 접근법이 채택되는 경우, 조약은 회원국에게 일정한 보호조치의 수립과 운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법체계와 정책 환경 그리고 전통지식 현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보호조치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많은 국가의 조약 가입을 유인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의지와 집행력에 따라 보호 수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최근 실시되었던 IGC 논의에서 이 두 접근법은 주요 쟁점이었다. 제49차(2024년 12월)와 제50차(2025년 3월) IGC에서는 두 접근법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관한 입장 차이가 논의와 조약문(안) 작업의 진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⁴⁹⁾ 이러한 접근법은 조약의 기본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약의 성격(구속력 여부 등)과 주요 조항의 내용들을 결정짓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IGC 논의는 이 두 접근법 중 어느 것을 택할지에 관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두 접근법과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 권리 기반 접근법과 조치 기반 접근법의 관련 쟁점별 입장〉

쟁점	권리 기반 접근법	조치 기반 접근법
기본 입장	전통지식은 IPLC의 권리가기에 이를 법적으로 인정·보장	새로운 권리 창설보다는 국가의 정책·법·제도·행정조치를 통한 보호
보호 구조	IPLC 또는 기타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권리 부여	국가가 보호조치를 설계·집행
구속력	강한 국제적 권리 및 의무	상대적으로 유연한 국가 의무 중심
경제적 이용	라이선스, 이용허락, 이익공유 등을 통한 직접적 경제적 권리 가능	상업화의 허용·규제 및 관리 중심
장점	IPLC의 통제권과 경제적·문화적 권리 보장 가능	국가별 법제·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 가능
한계	퍼블릭 도메인 축소 및 혁신 저해 우려	보호 실효성이 국가의 의지·집행력에 좌우됨

3.2. 보호대상에 관한 쟁점: 일반적 적격 기준과 구체적 적격 기준

3.2.1. 제3조 보호 적격 기준

IGC가 논의 중인 조약문(안)⁵⁰⁾의 제3조는 전통지식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기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조는 일반적 의미의 전통지식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는 전통지식의 개념을 설명하는 조항으로서, 전통지식이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3조는 보호 적격 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통지식 가운데 실제로 조약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능을 지닌다. 즉, 보호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조건·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에 관한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입장 차이는 너무나 크다. 제공국은 일반적·포괄적인 적격

48) “유엔의 원주민권리선언의 구체적인 실현을 전통지식 보호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IPLC의 주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49) Chidi Oguamanam, “Discord over Rights and Measures-Based Approaches to the Protection of TK and TECs Scuttles WIPO IGC 50”, ABS CANADA, <<https://abs-canada.org/discord-over-rights-and-measures-based-approaches-to-the-protection-of-tk-and-tces-scuttles-wipo-igc-50/>>, 검색일: 2026. 3. 1.

50) WIPO, supra note 26.

기준을 설정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전통지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은 IPLC의 이해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공국과 IPLC는 전통지식이 오랜 세월 공동체의 문화적·전통적 정체성, 생활방식,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되어 전승되어 오는 것임을 강조하며, 구체적 적격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수많은 전통지식이 보호받지 못하여 남용과 악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제1조에서 정의된 일반 전통지식과 제3조의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의 범위를 최대한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이용국은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적격 기준을 설정하여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한다. 이용국은 전통지식의 개념 자체는 비교적 일반적·추상적으로 설정되어도 되지만, 이 모든 전통지식이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기술 및 혁신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이용국은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제한적·구체적 적격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3조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조문 해석이 아니라, 전통지식 보호의 기본 방향을 둘러싼 제공국과 이용국의 첨예한 대립이다. 제공국과 IPLC는 전통지식의 보호범위를 최대한 확대, 즉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여 폭넓은 보호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용국은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호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전통지식 보호의 강도와 범위, 나아가 전통지식 보호 의미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다.

3.2.2. 일반적 적격 기준

제3조와 관련하여 Original Facilitators' Alternative는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의 적격 기준과 관련하여 비교적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제공국이 지지하는 의견으로, 전통지식 보호에 있어 '권리 기반 접근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통지식 보호의 적격 기준을 엄격하고 세분화된 조건으로 설정하기보다는 IPLC가 전통지식을 형성·유지·전승해온 사실 자체를 중시함으로써 더욱 넓은 범위의 전통지식을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표2 제공국 지지 의견〉

Original Facilitators' Alternative
제3.1조 본 조약에 따른 보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통지식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a)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에 의하여 창작·형성·전승되거나 또는 이들에게 계시되고, [그들의 관습법에 따라] 이들에 의하여 집단적 맥락에서 개발·보유·이용 및 유지되는 것
(b)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문화적·사회적 정체성 및 전통유산과 관련되거나, 또는 그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c)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 내 또는 세대 간에 전승되는 것.
제3.2조 회원국 또는 체약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는 보호대상인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IPLC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통지식을 창작·형성·전승해 왔다는 사실 자체를 중심으로 보호 적격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이는 보호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을 외부적 심사 기준이 아닌, IPLC 내부에서 창작되고 형성되어 연속적으로 전승되는 전통지식의 존재에 두는 것이라 판단된다.

제3.1조 (a)항은 이러한 일반적인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 동 조항은 IPLC에 의하여 “창작

되고(created), 형성되며(generated), 전승된(received by)” 전통지식뿐만 아니라, IPLC에게 “계시된(revealed to)” 전통지식까지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계시된”이라는 표현은 전통지식의 형성 과정을 합리적·경험적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꿈이나 예지 또는 영적 체험 등과 같은 IPLC의 세계관과 정신 체계 속에서 인식되는 지식까지 포함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지식재산이 탄생하는 기존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IPLC만의 인식 체계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을 이해하려는 시도라 판단된다.

제3.1조 (b)항은 전통지식과 IPLC 사이의 관련성(연결 정도)을 비교적 완화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해당 전통지식이 IPLC의 문화적·사회적 정체성과 전통유산에 “연결되어 있거나(linked with)” 또는 그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연결’이라는 용어는 전통지식과 공동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엄격한 일치성이나 배타적인 귀속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단순한 연관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관련성 요건을 완화한 것은 보다 넓은 범위의 전통지식을 보호대상 범위 안으로 포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3.1조 (c)항은 전통지식의 ‘전승’과 관련하여 “한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전승(transmitted within a generation o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는 설명을 통해 전승 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대 수 또는 년(年)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일정 기간 이상의 존속이나 연속적 전승에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지식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한 비교적 유연하고 광범위하게 보호 적격성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동 조항은 전통지식의 시간적 요건을 정량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제3.2조는 회원국 또는 계약 당사국이 국내법에 따라 추가적인 적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국내법 차원에서 보호대상 적격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적격 기준 추가를 통해 보호 적격성의 문턱을 높여 보호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회원국이 자국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다양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호대상을 더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동 조는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을 기본으로 두고 추가적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개별 회원국에게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결국, Original Facilitators’ Alternative는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의 적격 기준을 IPLC와 전통지식 사이의 사실적 관계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 전통지식과 보호대상인 전통지식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양자를 일치하려는 제공국과 IPLC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IPLC의 권리와 이익을 가장 두텁게 보호·보장하려는 규범적 방향성을 내재하고 있다.

3.2.3. 구체적 적격 기준

제3조에 관한 Alt. 1은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의 적격 기준과 관련하여 비교적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지식의 보호대상 적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관련성 및 전승 기간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적 전통지식과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을 구분 짓고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장이다.

〈표3 이용국 지지 의견〉

Alt. 1
제3.1조 본 조약에 따른 보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통지식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a) 원주[민], [UNDRIP에 규정된 바에 따른 원주[민]], 지역공동체 및/또는 [기타 수혜자]에 의하여 창작·형성·전수 또는 계시되고, [그들의 관습법 및 관행에 따라] 이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집단지 맥락에서] 개발·보유·이용 및 유지되는 것. (b) 원주[민], 지역공동체 및/또는 [기타 수혜자]의 문화적 정체성 및 전통유산과 연계되고, 그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또한 이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c)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50년 또는 5세대 이상의 기간 동안 세대 간 또는 세대로부터 세대로 전승되는 [전승될 수 있는] 것.
제3.2조 회원국 또는 체약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보호대상을 창작한 기타 수혜자에 대하여도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 (a)항은 IPLC와 기타 수혜자에 의하여 “창작, 형성, 전수, 또는 계시된(created, generated, received, or revealed, by)” 전통지식이 보호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이란 단순히 존재하는 지식 모두가 아니라, IPLC 및 기타 수혜자에 의하여 창작·형성·전수·계시 되는 지식이라는 설명을 통해 귀속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제3.1조 (b)항은 전통지식과 IPLC·기타 수혜자의 관계에 관하여 보다 강한 관련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동 조항은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은 해당 IPLC의 사회적·문화적 정체성 및 전통유산과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확히 특징적으로 관련된(distinctively associated with)”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다 밀접하고 식별 가능한 정도의 관련성을 요구함으로써 보호대상 범위를 비교적 제한하는 입장이다.

제3.1조 (c)항은 “최소 50년 또는 5세대 이상 동안 전승된(for a term not less than fifty years or five generations)” 전통지식인 경우 보호 적격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단순히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전승이라는 추상적·일반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보호대상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지식의 역사성·연속성·지속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지식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이용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다.

제3.2조는 기타 수혜자에 관하여 비교적 제한적인 입장이다. 전통지식을 창조한 기타 수혜자에 대한 보호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 조항은, 기타 수혜자가 전통지식의 창작자가 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는 회원국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국제의무는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타 수혜자의 보호 여부는 국제 조약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는 것이다.

3.3. 핵심 쟁점에 관한 대응 방안

3.3.1. 보호 방식(접근법)에 대한 대응 방안

전통지식 보호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조치 기반 접근법’을 지지하여야 한다.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IGC 논의에서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이용국 위치에 있으므로, 전통지식에 대한 강력한 실체적 권리를 국제적으로 창설하는 ‘권리 기반 접근법’보다는, 회원국이 자국의 법제도·정책·산업구조에 따라 유연성 있는 보호수단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조치 기반 접근법’이 합리적이다.

특히, 권리 기반 접근법에 따라 전통지식에 대한 포괄적 통제권, 이용허락권 등이 IPLC에게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경우, 보호 범위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기술혁신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반면, 조치 기반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전통지식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호 수단의 설계와 집행을 회원국 재량에 위임함으로써 자국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이는 IPLC의 이익 보호와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 및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IGC 논의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같은 제도적·절차적 보호 수단을 중심으로 ‘조치 기반 접근법’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면서, 전통지식에 대한 새로운 권리 창설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3.3.2. 보호대상(적격 기준)에 대한 대응 방안

보호대상 적격 기준(제3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Alt. 1을 지지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 전통지식과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을 구별하여, 보호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정하려는 구조이다. 이용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전통지식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보호대상의 적격 기준은 명확하게 한정될 필요가 있다.

Alt. 1은 “문화적 정체성과의 명확한 관련성”, “50년 또는 5세대 이상 전승”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특허심사, 기술개발, 산업활용 등과 같은 실질적 운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용국인 우리나라의 이해와 부합한다. 또한, 기타 수혜자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 주체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일률화하지 않고, 회원국의 다양한 상황과 법제도를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이용국의 위치에 있으므로,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내법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Alt. 1은 우리나라가 지지하기에 가장 적절한 입장이다.

4. 결론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IGC 논의는 IPLC의 지식과 문화, 그리고 이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통지식은 IPLC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생활양식 등에서 형성되어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지식체계이다. 그러나 지식재산은 개인 창작자, 한정된 보호기간, 명확한 발명 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에, 집단적·세대 간·관습법적 성격을 지닌 전통지식 보호에 한계가 있다. Quassia amara 사례는 오히려 특허제도가 IPLC의 전통지식 약탈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공국과 IPLC가 독자적 권리 부여를 통한 보호를 주장하는 근거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IGC는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 관한 논의 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다. 어려움의 이유는 보호 방식과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의 적격 기준에 대한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의 구조적인 입장 차이에 있다.

근본적인 대립은 보호 방식에 관한 차이, 즉 권리 기반 접근법과 조치 기반 접근법의 차이에

서 나타난다. 권리 기반 접근법은 IPLC를 전통지식의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통제권, 이용허락권 등을 부여하는 입장이다. 조치 기반 접근법은 새로운 권리의 창설보다 국가가 제도적·행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자는 IPLC의 실질적 권리보장에 유리하고, 후자는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접근법이 조약문(안)의 기본 구조로 채택되는지는 향후 조약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을 결정한다.

이러한 대립은 일반적 전통지식과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의 구분에서도 나타난다. IGC는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유연한 일반적 정의를 설정하려 한다. 이에 제1조는 일반적 의미의 전통지식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3조는 제1조에서 정의된 전통지식 가운데 실제로 조약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는 보호 적격 기준에 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전통지식 보호체계에서 핵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결국 제3조이다.

이러한 제3조를 둘러싸고는 제공국과 이용국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제공국과 IPLC는 제1조의 일반적 전통지식과 제3조의 보호대상 전통지식의 범위를 최대한 일치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전통지식이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적격 기준이 설정되면 실제 보호가 필요한 전통지식이 보호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이용국은 일반적 전통지식과 보호대상 전통지식을 구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기준을 설정하려 한다. 이는 광범위한 보호가 연구개발, 기술혁신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다. 결국 제3조에 관한 논의는 전통지식 보호의 강도와 범위, 나아가 국제적 의무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용국의 위치에 있으므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산업·기술 발전과 국제적 보호의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 전통지식과 보호대상인 전통지식을 구별하는 기준, 그리고 권리 기반 접근법과 조치 기반 접근법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IGC 논의는 IPLC의 권리보장과 이용국의 우려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며, 접근법과 보호대상의 적격 기준(제3조)을 둘러싼 논의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학술지(국내 및 동양)

- 김병일, “전통지식의 특별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WIPO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16권 제1호 (2012).
- 김영모, “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에 관한 검토: WIPO 조약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집 제3호(2024).
- 김영모,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에 관한 협상쟁점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9권 제2호(2024).
- 김혜선, “지식재산권법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38집 제3호(2014).
- 배대현, “특허실체법조약(안)의 특허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산업재산권」, 제13호(2003).
- 손승우·이정훈, “최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재산권」, 제61호(2019).
- 이민우 외 2인,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비교 연구 -WG8j와 WIPO/IGC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1호(2020).

학술지(서양)

- Cleo-Symone Scott, “Biopiracy: Using New Laws and Databases to Protect Indigenous Communities”, *Richmon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30 No.2(2024).
- N. S. Gopalakrishnan,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he Need for a Sui Generis Law in India”, *The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Vol.5 No.5(2002).

인터넷 자료

- 산림청, “산림임업통계플랫폼: FoSS 산림통계시스템”, 산림청, <<https://kfss.forest.go.kr/stat/>>, 검색일: 2026. 3. 18.
- 지식재산처, “한국전통지식포털”, 지식재산처, <<https://koreantk.com/>>, 검색일: 2026. 3. 18.
- Chidi Oguamanam, “Discord over Rights and Measures-Based Approaches to the Protection of TK and TECs Scuttles WIPO IGC 50”, ABS CANADA, <<https://abs-canada.org/discord-over-rights-and-measures-based-approaches-to-the-protection-of-tk-and-tces-scuttles-wipo-igc-50/>>, 검색일: 2026. 3. 1.
- IWGIA,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WGIA, <<https://iwgia.org/en/world-intellectual-property-organization-wipo.html>>, 검색일: 2026. 3. 1.
- Ugonma Nwankwo & Charles Kenny, “Their Knowledge, Their Rights: Us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ellectual Property to Protect Communities”,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https://www.cgdev.org/blog/their-knowledge-their-rights-using-traditional-knowledge-and-intellectual-property>>, 검색일: 2026. 1. 2.
- United Nations, “Indigenous Peoples, Indigenous Voices”, United Nations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https://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5session_factsheet1.pdf>, 검색일: 2026. 1. 2.
- WHO,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the health and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WHO, <<https://www.who.int/initiatives/global-plan-of-action-for-health-of-indigenous-peoples/frequently-asked-questions-on-the-health-and-rights-of-indigenous-peoples>>, 검색일: 2026. 1. 1.
- WIPO, “Traditional Knowledge”, WIPO, <<https://www.wipo.int/en/web/traditional-knowledge/tk/index>>, 검색일: 2026. 1. 3.
- WIPO Traditional Knowledge Division,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ellectual Property, Background Brief No.1”, WIPO,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tk/en/docs/background_brief_on_tk.pdf>, 검색일: 2026. 1. 2.

기타 자료

- 김병일, “전통지식의 독자적(sui generis)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WIPO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ISSUE PAPER, 제2017-8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 김영모,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과 해외 입법례”, IP Focus, 제2023-26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 김영모·강경남, “유전자원 출처공개 국제 논의 현황과 국내 산업영향 분석”, IP Focus, 제2024-0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 CBD, “Glossary of relevant key terms and concepts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8(j) and related provisions (CBD/COP/DEC/14/13)”, CBD, 2018.
-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 Introduction to Core Concepts and Objectives: What are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Why Should They Receive Legal Protection?”, Regional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2009.
- France Libertés-Fondation Danielle Mitterrand, “The Couachi Plant: A Case History of Biopiracy”, France Libertés, 2022.
- Krystyna Swiderska,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A framework based on Customary Laws and Bio-Cultural Heritage”, Paper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dogenous Development and Bio-Cultural Diversity, IIED, 2006.
- WIPO,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O/GA/26/6)”, WIPO, 2000.
- WIPO,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 An Overview (WIPO/GRTKF/IC/1/3)”, WIPO, 2001.
- WIPO, “Legal Principles Related to an International Instrument (WIPO/GRTKF/IC/46/10)”, WIPO, 2023.
- WIPO,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Draft Articles (WIPO/GRTKF/IC/52/4)”, WIPO, 2025.